

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변 호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동훈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군사법원법 개정(법률 제18465호, 2021. 9. 24. 공포, 2022. 7. 1. 시행)에 따라 기존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 · 제1지역군사법원 · 제2지역군사법원 · 제3지역군사법원 ·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개편되고,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사재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됨
- 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, 변호사법 시행령의 ‘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’을 ‘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’으로 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의 ‘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’을 ‘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’으로, 변호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다목의 ‘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, 보통군사법원’을 ‘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’으로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군사법원법」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

제8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군사법원법」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) ① (생략)	제7조의2(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. 다만,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군사법원법」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	3. 「군사법원법」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) 법 제36조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”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.	제8조(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재판기관	1. -----
가. 나. (생략)	가. 나. (현행과 같음)
다. 「군사법원법」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, 보통군사법원	다. 「군사법원법」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법무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178